



정보제공을 통한 퇴직연금 가입자 행동변화 유도

김동경 연구위원

연말

퇴직연금 실질수익률은 저금리 상황과 더불어 원리금 보장형상품 중심의 적립금 운용,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1%대에 불과하며, 일시금 선호 현상으로 연금전환율은 2.1%에 불과함.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에서는 가입자의 현실편향으로 인한 불합리한 운용행태 방지, 연금지급방식 선택 유도를 위해 '연금 공시규칙(Lifetime Income Disclosure Rule)' 시행안을 발표하였음. 확정기여형(DC) 제도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노후자산이 변화하므로, 가입자의 행동변화 유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저금리 장기화,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19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전체적립금 221조 원 중 실적배당형상품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함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확정되고 투자위험이 사용자(기업)에 귀속되는 DB형은 운용손실에 따른 기업의 부담방지 차원에서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대한 편중도가 높음
- 한편, 국내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수는 수백 개이나, 2018년 기준 DC형 가입자가 실제 적립금 운용에 활용하고 있는 상품 수는 평균 1.7개임¹⁾

〈표 1〉 퇴직연금 실적배당형상품 운용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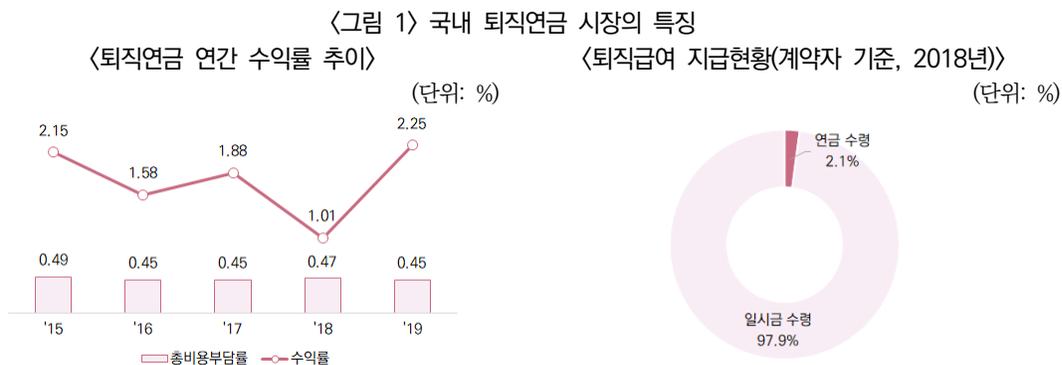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DB형 | 1.8% | 2.0% | 3.5% | 4.8% | 5.4% |
| DC형 및 IRP 특례 | 18.9% | 16.7% | 16.7% | 15.9% | 15.7% |
| 퇴직연금제도 전체 | 6.9% | 6.8% | 8.4% | 9.7% | 10.7%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4. 6); (2019. 4. 8); (2018. 3. 22); (2017. 5. 3); (2016. 3. 7)

■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퇴직연금가입자의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 Present Bias)과 연금자산에 대한 미미한 관심은 '저조한 수익률'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²⁾

1) 임예진(2020),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 투자선택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제공 수에 관한 논의」
 2)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저금리 장기화, 수수료 등 경제·제도적 요인 외에 가입자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 등에 기인함

- 2019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2.25%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1%대임
 -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보관 및 관리, 펀드운용 등 서비스 제공 대가인 총비용부담율은 0.45%임
 - 제도 유형별로는 실적배당상품 운용비중이 높은 DC형(2.83%)과 IRP(2.99%)제도의 연간수익률이 DB형(1.86%)보다 높음
- 상품운용 지시권이 있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90% 이상이 투자운용 변경지시를 내린 경험이 없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연금자산에 대한 무관심도 큼³⁾
- 퇴직연금 적립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안정적 소득흐름을 창출하여 장수리스크 해지가 가능하나, 가입자들은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고 있음
 - 일시금 선호현상은 짧은 제도운영기간,⁴⁾ 낮은 적립금 규모 등에 기인하는데, 가입자의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에 따른 연금자산 증식은 급여수령 단계에서 연금지급 방식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음



주: 1) 연간수익률은 수수료를 차감한 적립금 가중평균 수익률임
 2) 총비용부담률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펀드총비용)/기말평균 적립금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4. 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4. 8),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의 경우, 최근 ① 현실편향으로 인한 불합리한 적립금 운용 행태 방지, ② 연금지급 선택 유도를 위해 ‘연금 공시규칙(Lifetime Income Disclosure Rule)’ 시행안을 발표함⁵⁾

- ERISA법 105조 개정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급여명세서(Pension Benefit Statement)상 적립급여, 예상 월급여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한 ‘SECURE Act’⁶⁾의 잠정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함
 - 정부는 근로기간 동안의 저축액이 퇴직소득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가 은퇴 후 월별 예상액을 상기하면서 본인의 저축 및 소비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둠

3) 류건식, 강성호(2018), 「한·일 퇴직연금의 운용행태 및 제도평가」, 『KIRI 고령화리뷰』
 4)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은 3.4%에 불과함; 통계청 보도자료(2019. 12. 27), “2018년 기준 퇴직연금 통계”
 5)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2020. 9. 18), “Pension Benefit Statements-Lifetime Income Illustrations, Department of Labor”
 6) SECURE는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의 약어임

